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회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297 발의연월일: 2021. 1. 11.

발 의 자:김회재·강준현·문진석

박상혁 • 박영순 • 소병훈

윤준병 · 장경태 · 조오섭

조응천 · 진선미 · 허 영

의원(12인)

# 제안이유

서민·중산층의 전세난 완화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약정 주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므로, 주택을 건축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 및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여 사업참여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매도하기로 약 정을 체결한 자가 주택을 건축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22년 1 2월 31일까지 취득세 10% 경감함(안 제31조의5제1항 신설).
- 나.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등을 건축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10% 경감함(안 제31조의5

제2항 신설).

다. 민간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 거나 최초로 주택 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공주택사업 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한 경우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함(안 제31조 의5제3항제1호, 제2호).

#### 법률 제 호

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1조의5(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) ① 「공공주택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 "공공주택사업자"라 한다)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100분의 1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
  - ②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 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여 최 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
  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.
  - 1.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공주택사업 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등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
  - 2.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취득한 주택 등을 6개월 이내에 공공주택사

업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한 경우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31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	제31조의5(공공주택사업자의 임
		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
		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)
		① 「공공주택특별법」에 따른
		공공주택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
		"공공주택사업자"라 한다)의 임
		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
		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
		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
		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
		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1
		00분의 10을 2022년 12월 31일
		까지 경감한다.
		②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
		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
		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
		체결한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
		축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
		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2년
		<u>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</u>
		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		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
		2항에 따라 경감받은 취득세를
		추정한다.

- 1.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공주 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 택 등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 오
- 2.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취득한 주택 등을 6개월 이내에 공공 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지 아 니한 경우